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7.2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043 - 870 - 5343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조(국가표준심의회의 관련 중앙행정기관 위원) 「국가표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5.6.30.,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1. 조달청장
12. 방위사업청장
13. 산림청장

[전문개정 2009.6.26.]

제3조(국가표준심의회의 회의) ①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15.6.30.>

[전문개정 2009.6.26.]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된다. <개정 2013.12.11.>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국무조정실의 국장급 공무원
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3. 표준과학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③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 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0.]

제5조(수당)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26.]

제5조의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의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6.26.]

제6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이하 "소관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하기 전에 소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관련 자료와 소관 계획의 제출일정 등을 정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표준의 수요자 및 생산자인 기관·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관 계획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확정할 경우 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전문개정 2009.6.26.]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시행계획의 공고) 법 제7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고, 법 제8조에 따라 확정된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8조(기본단위의 정의 및 현시방법) 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의 정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이 현시(顯示)한다. <개정 2015.6.30.>

[전문개정 2009.6.26.]

제8조의2(기본단위의 기호)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국제도량형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길이의 측정단위인 미터: m
2. 질량의 측정단위인 킬로그램: kg
3. 시간의 측정단위인 초: s
4. 전류의 측정단위인 암페어: A
5. 온도의 측정단위인 켈빈: K

6. 물질량의 측정단위인 몰: mol
 7. 광도의 측정단위인 칸델라: cd
 [본조신설 2015.6.30.]

제9조(유도단위) ① 법 제11조에 따라 기본단위와 조합하여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誘導單位)는 별표 2와 같다.

② 국제적으로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9.6.26.]

제10조(국제단위계의 접두어)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제단위계를 십진 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26.]

제11조(측정표준의 개발 및 채택 등) ① 표준원은 표준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측정표준안을 작성하여 이를 국제표준 또는 외국의 측정표준과 비교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표준안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이를 국가측정표준으로 채택하여 공고하고,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12조(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국제기준에 맞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유지할 수 있을 것
 2. 측정장비 및 측정환경이 국제기준에 적합하고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溯及性)이 유지될 것
 3.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기술요원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②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정이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13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인증된 표준물질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2. 표준물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의 수립과 그 밖에 인증제도의 운영
3. 표준물질의 안정적 공급방법의 마련
4. 표준물질에 관한 교육·홍보 등 보급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14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 체계의 확립

2. 참조표준 제정절차의 수립 및 사후관리
3. 참조표준과 측정데이터의 축적 및 보급 체계의 확립
4. 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체계 유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원으로 하여금 참조표준에 관한 측정데이터의 수집·축적 및 평가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6.]

제15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가측정표준에 따른 측정기술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소관 측정기기의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 유지사업
3. 중소기업의 국가측정표준 활용 장려사업

[전문개정 2009.6.26.]

제15조의2(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 A 0001)에 따른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에 적합할 것
2.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것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국가표준에 대하여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여부 등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표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국가표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6.30.]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4로 이동 <2015.6.30.>]

제15조의3(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가표준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정보의 제공
2. 국가표준 업무의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3. 국가표준 통계의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국가표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6.30.]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5로 이동 <2015.6.30.>]

제15조의4(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검정·등록·인정·심사·검사·신고·형식승인 등(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위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6.26.]

[제1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5.6.30.>]

제15조의5(표준인증심사제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1. 별표 5에 따른 심사모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법령에 규정하는 방법
2. 별표 5에 따른 심사모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을 해당 법령에 반영하여 규정하는 방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인증등에 도입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모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심사모듈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인증등에 도입한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모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인증등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의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인증등의 기준 및 절차 등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26.]

[제15조의3에서 이동 <2015.6.30.>]

제15조의6(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0.12.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인증등의 표시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인증등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3항에 따라 정한 세부적인 표시기준 및 방법을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하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26.]

[제15조의4에서 이동 <2015.6.30.>]

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6조의2(시험결과 상호인정을 위한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의 시험결과를 인정받아 해당 인증의 시험항목을 생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시험한 결과에 따른 시험성적서로 한정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2. 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세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세부절차를 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17조(국가표준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조사·연구, 자료 발간,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2. 교정방법과 교정절차의 개선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측정의 정밀도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 ② 협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전문개정 2009.6.26.]

제20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6.30.>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측정표준안 등의 접수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측정표준안의 국가측정표준으로의 채택·공고 및 심의회 보고
4.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관리체계 및 기술적인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의 제정·고시
5.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제정·고시
6.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물질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제정·고시
7.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서식과의 적합성 확인,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의 통보
8. 제15조의3에 따른 국가표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본조신설 2009.6.26.]

부칙 <제16494호, 1999.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51호,2000.6.23.>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측정기기교정협회"를 "계량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계량측정협회"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78호,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국방부장관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4조제2항 전단、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1569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②④까지 생략

②⑤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복지부차관

②⑥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69호,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③③까지 생략

③④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용노동부차관

③⑤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534호,2010.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2호,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차관

2. 안전행정부차관

3. 문화체육관광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고용노동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방위사업청장

10.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제2항, 제15조의4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⑪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955호,2013.12.1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9조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⑤부터 ②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5>까지 생략

<286>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28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363호,2015.6.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03호,2015.12.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2호,2017.7.26.>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9의2. 중소벤처기업부차관

⑤부터②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5.6.30.>

기본단위의 정의(제8조제1항 관련)

1. "미터(m)"는 빛이 진공에서 1/299 792 458 초 동안 진행한 경로의 길이이다.
2. "킬로그램(kg)"은 질량의 단위로서 국제킬로그램 원기의 질량과 같다.
3. "초(s)"는 세슘 133 원자의 바닥 상태에 있는 두 초미세 준위(準位) 사이의 전이에 대응하는 복사선의 9 192 631 770 주기의 지속시간이다.
4. "암페어(A)"는 무한히 길고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원형 단면적을 가진 두 개의 평행한 직선 도체가 진공 중에서 1 미터의 간격으로 유지될 때, 두 도체 사이에 미터당 2×10^{-7}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일정한 전류이다.
5. "켈빈(K)"은 물의 삼중점(三重點)에 해당하는 열역학적 온도의 1/273.16이다. 다만, 온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섭씨온도로 표시할 수 있다.
 - 가. 섭씨온도의 기호는 "t"로 표시하고, $t = T - T_0$ 식으로 정의된다.
 - 나. 섭씨온도 "t"는 기호 "T"로 표시하는 열역학적 온도와 물의 어는 점인 기준온도 $T_0 = 273.15$ K와의 차이를 나타낸다.
 - 다. 온도차이 또는 온도간격은 켈빈이나 섭씨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t/^{\circ}\text{C} = T/\text{K} - 273.15$ 식으로 정의된다.
 - 라. 섭씨온도의 단위는 섭씨도(기호 $^{\circ}\text{C}$)이며, 그 크기는 켈빈과 같다.
6. "몰(mol)"은 탄소 12의 0.012 킬로그램에 있는 원자의 개수와 같은 수의 구성요소를 포함한 어떤 계(系)의 물질량이다.
7. "칸델라(cd)"는 진동수 540×10^{12} 헤르츠인 단색광을 방출하는 광원의 복사도가 어떤 주어진 방향으로 스테라디안당 1/683 와트일 때 이 방향에 대한 광도이다.

[별표 2] <개정 2015.6.30.>

특별한 명칭과 기호로 표시할 수 있는 유도단위(제9조제1항 관련)

유도량	명칭	기호	다른 국제단위계의 단위로 표시	기본단위로 표시
1. 평면각	라디안	rad	1	m/m
2. 입체각	스테라디안	sr	1	m ² /m ²
3. 진동수, 주파수	헤르츠	Hz		s ⁻¹
4. 힘	뉴턴	N		m · kg · s ⁻²
5. 압력, 응력	파스칼	Pa	N/m ²	m ⁻¹ · kg · s ⁻²
6. 에너지, 일, 열량	줄	J	N · m	m ² · kg · s ⁻²
7. 일률, 동력, 전력, 방사선속, 복사선속	와트	W	J/s	m ² · kg · s ⁻³
8. 전하, 전하량	쿨롱	C		s · A
9. 전위차, 전압, 기전력	볼트	V	W/A	m ² · kg · s ⁻³ · A ⁻¹
10. 전기용량, 정전용량	패럿	F	C/V	m ⁻² · kg ⁻¹ · s ⁴ · A ²
11. 전기저항	옴	Ω	V/A	m ² · kg · s ⁻³ · A ⁻²
12. 컨덕턴스	지멘스	S	A/V	m ⁻² · kg ⁻¹ · s ³ · A ²
13. 자기선속	웨버	Wb	V · s	m ² · kg · s ⁻² · A ⁻¹
14. 자기선속밀도	테슬라	T	Wb/m ²	kg · s ⁻² · A ⁻¹
15. 인덕턴스	헨리	H	Wb/A	m ² · kg · s ⁻² · A ⁻²
16. 섭씨온도	섭씨도	℃		K
17. 광선속	루멘	lm	cd · sr	m ² · m ² · cd = cd
18. 조명도	럭스	lx	lm/m ²	m ² · m ⁻⁴ · cd = m ⁻² · cd
19. (방사성 핵종의) 활성도	베크렐	Bq		s ⁻¹
20. 흡수선량, 비(부여) 에너지, 커마	그레이	Gy	J/kg	m ² · s ⁻²
21. 선량당량, 주변선량당량, 방향선량당량, 개인선량당량	시버트	Sv	J/kg	m ² · s ⁻²
22. 촉매 활성도	카탈	kat		s ⁻¹ · mol
※ 비교 1. 라디안과 스테라디안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나 같은 차원을 가진 양을 구별하기 위한 유도단위를 표시한다.				

2. 기호 “rad”와 “sr”은 일반적으로 숫자와 조합하여 쓰일 때에는 생략하여야 한다.
3. 광도 측정에서는 보통 스테라디안(기호 sr)이 단위 표시에 사용된다.
4. 위의 유도단위는 별표 4의 국제단위계 접두어와 조합하여 밀리섭씨도 또는 $m^{\circ}\text{C}$ 등과 같이 쓰일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10.12.20>

국제단위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유도단위(제9조제2항 관련)

명칭	기호	국제단위계의 단위로 나타낸 값
1. 분	min	1 min = 60 s
2. 시	h	1 h = 60 min = 3600 s
3. 일	d	1 d = 24 h = 86 400 s
4. 도	°	1° = ($\pi/180$) rad
5. 분	'	1' = (1/60)° = ($\pi/10\,800$) rad
6. 초	''	1'' = (1/60)' = ($\pi/648\,000$) rad
7. 리터	L, l	1 L = 1 dm ³ = 10 ⁻³ m ³
8. 그램	g	1 g = 10 ⁻³ kg
9. 톤	t	1 t = 10 ³ kg
10. 네퍼	Np	1 (Np) = 1
11. 벨	B	1 B = (1/2) ln 10 (Np)
12. 전자볼트	eV	1 eV = 1,602 176 53 (14) × 10 ⁻¹⁹ J
13. 돌톤	Da	1 Da = 1,660 538 86 (28) × 10 ⁻²⁷ kg
통일원자질량단위	u	1 u = 1 Da
14. 천문단위	ua	1 ua = 1,495 978 706 91 (6) × 10 ¹¹ m
15. 해리		1 해리 = 1852 m
16. 노트	kn	1 kn = 1 해리 매 시 = (1852/3600) m/s
17. 아르	a	1 a = 1 dam ² = 10 ² m ²
18. 헥타르	ha	1 ha = 1 hm ² = 10 ⁴ m ²
19. 바아	bar	1 bar = 0.1 MPa = 100 kPa = 1000 hPa = 10 ⁵ Pa
20. 옹스트롬	Å	1 Å = 0.1 nm = 100 pm = 10 ⁻¹⁰ m
21. 바안	b	1 b = 100 fm ² = (10 ⁻¹² cm) ² = 10 ⁻²⁸ m ²

[별표 4] <개정 2010.12.20>

국제단위계의 접두어(제10조 관련)

인 자	접 두 어	기 호	인 자	접 두 어	기 호
10^1	데 카	da	10^{-1}	데 시	d
10^2	헥 토	h	10^{-2}	센 티	c
10^3	킬 로	k	10^{-3}	밀 리	m
10^6	메 가	M	10^{-6}	마이크로	μ
10^9	기 가	G	10^{-9}	나 노	n
10^{12}	테 라	T	10^{-12}	피 코	p
10^{15}	페 타	P	10^{-15}	펨 토	f
10^{18}	엑 사	E	10^{-18}	아 토	a
10^{21}	제 타	Z	10^{-21}	젱 토	z
10^{24}	요 타	Y	10^{-24}	욕 토	y

[별표 5] <개정 2015.6.30.>

표준인증심사제의 심사유형(제15조의4제1항 관련)

1. 에이(A) 심사모듈

가. 개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으로 해당 제품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제품시험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 적합성 선언”이라 한다)하는 심사모듈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제조업자등은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시험 여부 및 제품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합성평가를 한다.

- 1) 제조업자등이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후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
- 2)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등록절차 없이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만 받는 방법
- 3) 제조업자등이 직접 시험한 후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제품을 등록하는 방법
- 4) 제조업자등이 제품의 등록절차 없이 직접 시험만 하는 방법

다. 인증등의 표시

제조업자등은 자기 적합성 선언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사후관리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등의 사후관리는 없으나, 자기 적합성 선언을 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등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2. 비(B) 심사모듈

가. 개요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여 인증등을 하는 심사모듈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2)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3)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다. 인증등의 신청

- 1)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등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들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증기관의 업무

- 1) 인증기관은 제조업자들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한다.
- 3)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한다.

4) 인증기관은 1)부터 3)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의 인증증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인증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

1) 제조업자들은 인증증이 된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인증증의 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인증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인증증의 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증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인증증의 표시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인증증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사후관리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증의 사후관리는 없으나,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증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3. 씨(C) 심사모듈

가. 개요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증을 하고, 제품의 인증증을 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모듈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2)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3)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다. 인증등의 신청

- 1)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등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들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증기관의 업무

- 1) 인증기관은 제조업자들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한다.
- 3)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한다.
- 4) 인증기관은 1)부터 3)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인증등을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들은 인증등이 된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인증등의 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인증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인증등의 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인증등의 표시

- 1)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들의 해당 제품이 인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Lot)에 대하여 인증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 1) 인증기관은 제품에 대한 인증등이 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출고 전 시험을 하는 방법
 - 나) 인증등이 된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방법
- 3) 인증기관은 인증등이 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인증등이 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등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4. 디(D) 심사모듈

가. 개요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인증등을 하며, 제품의 인증등을 한 후에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 모듈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 1)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나)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다)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인증등의 신청

- 1) 제조업자들은 해당 인증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등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들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증기관의 업무

- 1) 인증기관은 제조업자들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1)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

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3)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가)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나)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4) 인증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등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제조업자등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증기관은 1)부터 4)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인증등을 받은 사항의 변경

1) 제조업자등은 인증등이 된 제품이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인증등의 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인증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인증등의 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인증등의 표시

1) 제조업자등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등의 해당 제품이 인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인증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 1) 인증기관은 제품에 대한 인증등이 된 후에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 3) 인증기관은 인증등이 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인증등이 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등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5. 이(E) 심사모듈

가. 개요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인증등을 하며, 제품의 인증등을 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모듈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 1)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나)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다)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인증등의 신청

- 1)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등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들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증기관의 업무

- 1) 인증기관은 제조업자들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1)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한다.
- 3)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한다.
- 4) 인증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들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조업자들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사

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인증기관은 1)부터 4)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인증등을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들은 인증등이 된 제품이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인증등의 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인증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인증등의 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인증등의 표시

- 1)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들의 해당 제품이 인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인증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 1) 인증기관은 제품에 대한 인증등이 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출고 전 시험을 하는 방법
 - 나) 인증등이 된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방법
- 3)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 4) 인증기관은 인증등이 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인증등이 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등의 소관 행정 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6. 에프(F) 심사모듈

가. 개요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인증등을 하며, 제품의 인증등을 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모듈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 1)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나)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다)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인증등의 신청

- 1)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등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들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증기관의 업무

- 1) 인증기관은 제조업자등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
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
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1)다)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
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
보한다.
- 3)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
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한다.
- 4) 인증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등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조업자등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사
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인증기관은 1)부터 4)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
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인증등을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등은 인증등이 된 제품이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인증등의 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인증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
- 2)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인증등의 증명서에 대하여 유효
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인증등의 표시

- 1)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들의 해당 제품이 인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인증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 1) 인증기관은 제품에 대한 인증등이 된 후에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출고 전 시험을 하는 방법
 - 나) 인증등이 된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는 방법
- 3) 인증기관은 인증등이 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인증등이 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등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7. 지(G) 심사모듈

가. 개요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품질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인증등을 하는 심사모듈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 1) 제품에 대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한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나) 제품에 대한 설계승인을 포함하지 않는 설계평가 및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다) 설계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하는 방법
-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인증등의 신청

- 1)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등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 2) 제조업자들은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증기관의 업무

- 1) 인증기관은 제조업자들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평가한다. 다만, 나목1)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설계승인이 되었음을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설계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인증기관은 제품의 기술설계가 관련 법령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한다.
- 3)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를 한다.
 - 가)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 또는 제품검사가 해당 요건에 충족됨을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나) 인증기관은 제품이 관련 법령에서 제품에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한다.

- 4) 인증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들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조업자들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인증기관은 1)부터 4)까지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의 인증증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인증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들은 인증증이 된 제품이나 그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인증증의 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인증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인증증의 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증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인증증의 표시

- 1)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인증증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2) 제조업자들의 해당 제품이 인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출고되는 모든 생산로트에 대하여 인증기관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의한 출고 전 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출고 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이 확인된 로트에만 인증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사. 사후관리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증증의 사후관리는 없으나,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증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8. 에이치(H) 심사모듈

가. 개요

인증기관이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하여 인증등을 하며, 제품의 인증등을 한 후에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심사모듈이다.

나. 적합성평가의 방법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1)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2)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다. 인증등의 신청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에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인증등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라. 인증기관의 업무

- 1) 인증기관은 제조업자들이 신청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의 반려 여부나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먼저 검토한다.
- 2) 인증기관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제조 및 품질관리 능력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질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장심사를 한다.
 - 가) 공장심사에는 제조업자들의 공장에 대한 현장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제조업자들은 공장심사를 하기 전에 인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공장심사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인증기관은 1) 및 2)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마. 인증등을 받은 사항의 변경

- 1) 제조업자들은 인증등이 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발급된 인증등의 증명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으면 인증기관에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2) 인증기관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한 인증등의 증명서에 대하여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바. 인증등의 표시

제조업자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신청한 제품의 인증등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인증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 사후관리

- 1) 인증기관은 제품에 대한 인증등이 된 후에 공장심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한다.
- 2) 공장심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가)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전체심사
 - 나) 공장의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일부심사
- 3) 인증기관은 인증등이 된 제품이 사후관리를 통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조업자들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등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인증등이 된 제품이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등의 소관 행정기관 또는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조사활동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9. 아이(I) 심사모듈

제품에 대한 인증등을 반드시 받도록 신규로 정하거나 기존의 인증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모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심사모듈로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모듈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인증등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적용하여 인증등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5.6.30.>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제15조의6제1항 관련)

1. 표시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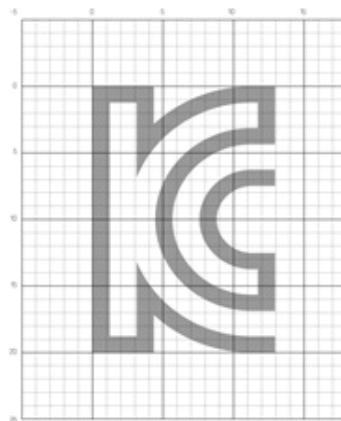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기본도안 모형



나. 도안 요령 및 색채

1) 도안 요령

가) 국가통합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른다.



나)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는 5mm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타인(打印)·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색채

가)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모형의 색채는 아래와 같은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을 사용한다.

	남색 5PB 2/8
---	---------------

나) 특수한 효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색(KS A 0062에 따른 10YR 6/4 색채)과 은색(KS A 0062에 따른 N 7 색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색, 금색 또는 은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사용할 수 있다.

	금색 10YR 6/4
---	----------------

	은색 N 7
---	-----------

	검정색 N 2
---	------------

※ 비교: 금색과 은색에는 반짝이는 효과를 넣어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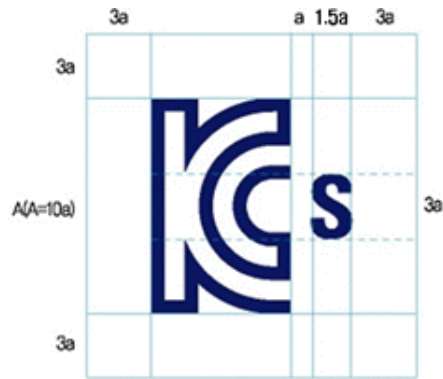
다.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

1)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부기도안 모형



※ 비교

1. 부기 글자는 인증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S, Q, E, H로 한다.
 2. S는 안전 분야, Q는 품질 분야, E는 환경 분야, H는 보건 분야의 국가통합인증마크에 각각 덧붙여 넣는다.
- 2) 도안 요령



2. 표시방법

- 가. 국가통합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제품의 표면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으로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품의 최소 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